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지원 근거 마련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13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지원 근거 마련	2
2. 개정안 부칙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5. 14.
3. 회 부 일 : 2025.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u>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u> ----- <u>법률 상담 등을</u> ----- ----- ----- ----. ② <u>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u>

② (생 략)	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¹⁾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범죄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2020년 1,197건, 2023년 5,05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816건 감소하였으나 4,234건 수준으로 나타남.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활동 침해 건수	1,197	2,269	3,035	5,050	4,234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

1)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함(「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 - 범죄 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보호자 등(「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기타(「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진학 - 퇴학처분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거나 피해교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 제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

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21조의 제목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지원단의 지원가능사안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며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개정안은 제21조제1항에서 법률지원단의 지원가능사안에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을 ‘법률 상담’에서 ‘법률 상담 등’으로 확대함.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 수행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내용 중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 인한 소송 수행은,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임.

현 행	개정안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

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

□ 다음으로, 개정안은 제21조제2항에서 교원이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법률 지원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은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법률 상담과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소송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²⁾

2)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다만 구체적인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1조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22조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에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해당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원지위법」상 법률 지원]

구분	법률지원단(제21조)	교원보호공제사업(제22조)	교육활동보호센터(제29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교원 지원	•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 지원
지원내용	• 법률 상담	•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 법률 자문(상담)
지원실적 (2024 기준)	* 시·도교육청별 운영방식 상이 *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 운영	• 258건(8억 8,238만원)	• 7,143건(6,187명)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 수행시 교원에게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될 경우, 명확한 근거에 따른 소송대리 등의 지원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해지고 소송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시간적·비용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법률 상담과 함께 소송대리도 가능한 법률지원단 운영 방안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현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포함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 제21조의 법률지원단이 지원하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명시할 실익이 없음.
 - ※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법률상담 및 지원,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소송비 지원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요건): 법률 자문 업무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법률 자문 프로그램 마련
- 다만, 법률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지원단 특성상 교육청별 인적 구성이 상이*한 상황으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공무원(행정직, 교육전문직)과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로만 구성하고 있어, 소송대리 방식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 현재 교원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률지원단을 위촉직으로 구성(대구, 부산, 충북 등)하거나 별도 인력풀을 마련하여 제공·연계(대전, 충남)하고 있으며, 지역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직접 변호사 선임을 지원(강원)하는 경우도 있음
 - ** 공무원 신분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직무상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소송 수임 불가
 -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서 생략)
 -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이에, 지원 내용을 ‘법률상담 제공,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수정안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u>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u>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u>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u>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

개정안	수정안
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부수정 - 소송지원에 대한 직접적 근거조항을 폭넓게 마련하는데 동의하나, 개정안 제21조제2항에서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로 한정하면 지원대상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부수정 - 소송지원에 대한 직접적 근거조항을 폭넓게 마련하는데는 동의하나, 개정안에 법률지원의 구체적 범주가 규정되지 않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1항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검토 - ‘그 밖에’, ‘등’ 등의 추가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추가적 상황이 과잉포괄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제22조를 통해 이미 달성됨.	
○ 경기도교육청: 이견없음 - 명시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나, 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중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 ☐ 안 부칙과 관련하여 교육부도 동일한 취지에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